옥천군 공고 제2020-51호

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1월 1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

○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○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수정

3. 주요골자

○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수정(동이면 삭제(별표 1)

4. 의견제출

○「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의견이 있

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환경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454, FAX : (043)731-2914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규칙 제 호

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

(제2조 관련)

구 분	마을수	제 외 지 역	비 고
계	2		
옥 천 읍	1	오대리	
군 북 면	1	막지리	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규 칙 명 :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　　견